

# 안 전 기 준

## 가 정 용 섬 유 제 품

## 부속서 1

(Textile Products)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3.용어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용 섬유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기타 제품류, 한복, 학생복의 안전요건,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맞춤복은 안전기준준수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K 0021 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 방법

KS K 0050 성인남성복의 치수

KS K 0051 성인여성복의 치수

KS K 0052 유아복의 치수

KS K 0055 노년 여성의 여성복 치수

KS K 0056 팬티스타킹의 치수

KS K 0059 모자의 치수

KS K 0088 양말의 치수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KS K ISO 3071 텍스타일-수성 추출액의 pH 측정

KS K ISO 14184-1 텍스타일 -포름알데히드 측정 - 제1부 : 유리 및 가수분해 포름알데히드(중류수 추출법)

KS K 0255 섬유물의 pH 측정 방법

KS K 0734 폴리에스테르 섬유 제품 중의 아릴아민 함유량 측정방법

KS K 0736 섬유제품의 알러지성 염료 함유량 시험방법

KS K 2620 충전재용 우모

KS K 9400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KS K 9401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

KS K 9402 남자 아동복의 치수

KS K 9403 여자 아동복의 치수

KS K 9404 파운데이션의 치수

KS M 6681 신발의 치수체계

KS M ISO 9407 신발의 치수-치수분류와 표식의 몬드포인트 시스템

KS C IEC 전기전자제품- 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EN 14362-1 Textiles.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certain aromatic amines derived from azo colorants. Detection of the use of certain azo colorants accessible without extraction

EN 14362-2 Textiles.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certain aromatic amines derived from azo colorants. Detection of the use of certain azo colorants accessible by extracting the fibres

EN 14682 Safety of children's clothing-Cords and drawstrings on children's clothing-Specifications

ISO 3071 Textiles -- Determination of pH of aqueous extract

ISO 14184-1 Textiles -- Determination of formaldehyde -- Part 1: Free and hydrolized formaldehyde (water extraction method)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 유아용 섬유제품

소방방재청고시 방염성능의 기준

### 3. 용어의 정의

3.1 표시사항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1 "조성섬유"라 함은 섬유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의 명칭을 말한다.

3.1.2 "혼용률"이라 함은 조성섬유가 2 종 이상의 섬유로 혼용 (혼방, 교직)되었을 때, 각 조성섬유의 무게를 전 조성섬유 무게에 대한 백분율 (%)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3.1.3 "취급상 주의사항"이라 함은 세탁 등의 취급 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섬유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2 안전요건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2.1 "방염제품"이라 함은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방염제품이라 표시하였을 경우는 소방방재청고시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2.2 "아동용 섬유제품"이라 함은 36개월 초과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내의류(3.2.3의 아동제품), 중의류(3.2.4의 아동제품), 외의류(3.2.5의 아동제품), 침구류(3.2.6의 아동제품), 가방(책가방 포함) 등을 말한다.

3.2.3 "내의류"라 함은 지속적으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셋류 (거들),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임부속옷류, 잠옷류, 양말류(타이즈, 스타킹 포함), 복대 등을 말한다.

3.2.4 "중의류"라 함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방한대,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가발 등을 말한다.(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형태의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한다)

3.2.5 "외의류"라 함은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를 말하며,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 등을 말한다.(재킷, 코트 형태의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한다).

3.2.6 "침구류"라 함은 잠을 자는 데 이용하는 제품으로서, 이불 및 요, 베개, 모포, 침낭, 커버, 시트, 헤덕, 카페트(면적이 1㎡미만) 등을 말한다.

3.2.7 "기타 제품류"라 함은 아동용 및 성인용 섬유제품 중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아동용가방 제외),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덮개, 커튼, 수의 등을 말하며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 대상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 4. 안전요건

4.1 유해물질 안전요건 각 구분별 섬유제품은 표 1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명	제품명	아동용 섬유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및 침구류
폼알데하이드 (mg/kg)		75 이하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아릴아민 (mg/kg) <sup>1)</sup>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sup>2)</sup>		0.1이하	-	-	-
유기주석화합물(mg/kg) <sup>3)</sup> TBT (tributyltin)		1.0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sup>4)</sup>		0.1이하			
방염제 <sup>5)</sup>		사용하지 말것			
납(mg/kg) <sup>6)</sup>		90이하	-	-	-
코드 및 조임끈 <sup>7)</sup>		적합	-	-	-
알러지성 염료 <sup>8)</sup>		사용하지 말것	사용하지 말것	-	-
pH <sup>9)</sup>		4.0 ~ 7.5		4.0 ~ 7.5	4.0 ~ 9.0
니켈(Ni)의 용출량 <sup>10)</sup>		0.5µg/cm <sup>2</sup> /week이하			

- 주 1. 염색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 KS K 0734에 따른다.
2. 코팅제, 고무,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표 2와 같다.
3.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나염 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 되지 않는다).
4. 피혁 및 모피 등 가죽 소재가 되어 있는 부분만 적용한다.
5. 대상물질은 TDBPP [tri(2,3-dibromopropyl) phosphate], PentaBDE[Pentabromodiphenyl ethers], OctaBDE[Octabromodiphenyl ethers]이고 방염가공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코팅, 프린팅, 단추 등 부자재를 사용된 부분만 적용한다, 단 금속류의 경우는 기준치를 300 mg/kg이하로 한다.
7. 코드 및 조임끈이 있는 제품은 KS K 0941 또는 EN 14682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의 연령 구분 및 정의는 KS K 0941에 따르되 아동용 제품의 대상 연령은 12세 이하로 한다.
8. 대상물질은 KS K 0736에 따르고 알러지 염료로 가공 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9. 아동용, 내의류, 중의류의 경우 '10년 12월 31일까지는 4.0~ 8.0를 적용한다.
10. 아동용 섬유제품을 제외한 제품은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제품이나 전자파차단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11.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부위 중 충전제 및 제품 면적 대비 5% 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 면적계산이 불가능한 끈이나 코드 등 섬유제 부속의 경우 전체 중량의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2.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 할 수 있다.

표 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종류

	물 질 명	CAS No.
1	Di-(2-ethylhexyl)phthalate(DEHP)	117-81-7
2	Butylbenzyl phthalate(BBP)	85-68-7
3	Dibutyl phthalate(DBP)	84-74-2

#### 4.2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안전기준을 준수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한 생활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당 가죽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또는 제3자 시험·검사기관, 외국의 시험성적서,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안전기준에 따랐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5. 시험 방법

**5.1 pH** KS K ISO 3071 또는 ISO 3071 에 따른다.

**5.2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KS K ISO 14184-1 또는 ISO 14184-1에 따른다.

**5.3 아릴아민 함유량** KS K 0147, KS K 0734, EN 14362-1, EN 14362-2에 따른다.

**5.4 프탈레이트가소제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5(어린이용 장신구의 프탈레이트가소제 시험방법)**에 따른다.

**5.5 유기주석화합물 함유량** KS K 0737에 따른다.

**5.6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유아용 섬유제품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시험)에 따른다.

## 5.7 방염제

**5.7.1 PBB, PentaBDE, OctaBDE**의 시험은 **KS C IEC 62321**에 따른다.

**5.7.2 TDBPP(TRIS)** 안전확인부속서 4.A(유아용 섬유제품의 방염제 시험방법)에 따른다.

**5.8 납** 안전확인부속서 35(어린이용 장신구의 납 시험방법)에 따른다.

**5.9 코드 및 조임끈** KS K 0941, EN 14682에 따른다.

**5.10 알러지성 염료** KS K 0736에 따른다.

**5.11 니켈의 용출량**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5.B(어린이용 장신구-니켈 용출량)에 따른다.

## 6.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

### 6.1 개별 제품

**6.1.1** 개별제품에는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별표 1]**에 따라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자명(국내품에 한함) 또는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및 제조국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자' 표시는 제품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품 문의처', '소비자상담실' '제조자명 (국산품에 한함)', '수입자명' 또는 '판매자명' 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6.1.2** 개별제품에는 제품의 추적이 가능한 제조연월, 최초 판매시점,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여 동제품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피부 접촉이 일시적인 타올 및 직접 착용하지 않은 가방, 방석류, 모기장, 덮개, 수의 등은 자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번호를 관리하고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6.2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

**6.2.1** 개별제품의 박음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류, 런닝셔츠, 팬티류, 양말류, 장갑류, 수영복, 체조복, 스카프, 머플러, 손수건, 가발류, 모자, 기저귀류, 신발, 수의류, 타올, 넥타이, 모기장, 덮개류, 턱받이류는 **6.1.1**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제품의 포장, 꼬리표 또는 스티커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침낭 및 카페트는 방염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개별제품의 표시한 경우도 소비자가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개별제품의 표시도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6.2.2** 동일품명으로 2 개 이상(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 포장 단위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

## 7. 세부표시 방법

### 7.1 섬유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

**7.1.1** 섬유제품별로 표기하여야 할 조성섬유는 [별표 2]에 따른다.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는 **KS K 0210**에 따라 조성 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수치를 병기한다. 다만, 섬유의 조성이 단일 섬유인 경우는 100 %로 표시한다. 조성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실로 된 원단, 그 원단 또는 조성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상품에 대하여는 다른 실 또는 원단의 매사용 부분을 분리하여 그 사용부분을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각 사용부분별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7.1.2** 다운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구분은 **KS K 2620**의 4. 조성에 따라 솜털(다운)제품, 솜털(다운) 및 깃털(페더)혼합제품, 깃털(페더)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솜털, 깃털, 기타로 구분하여 퍼센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7.1.3 특수한 표시방법** 7.1.1항의 표시방법에 갈음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를 할 수 있다.

- (1) 조성 섬유 중 어느 한 종류의 섬유의 혼용률이 8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혼용률을 표시하는 수치에 “이상”이라 부기하고 기타의 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는 일괄하여 기재하고 그들 섬유의 혼용률을 합계한 수치에 “미만”이라 부기하여 표시하는 방법
- (2) [별표 3]에 적힌 섬유제품(그 조성섬유 중 섬유의 종류가 2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그 조성섬유 중 혼용률이 큰 것부터 순차로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를 열기하는 방법
- (3) [별표 4]에 적힌 섬유제품(그 조성섬유 중 섬유의 종류가 2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별표 3]와 같이 표시하거나 또는 조성섬유 중 혼용률이 큰 것부터 적어도 2 이상의 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를 순차로 열기하고, 나머지의 섬유를 “기타”로 일괄하여 표시하는 방법
- (4) 안감을 사용하는 섬유제품에 대하여는 그 안감을 분리하여 섬유조성 또는 혼용률을 표기한다.
- (5) 이불 및 요의 솜, 침낭의 충전재로 방적공정의 폐설물, 천조각 또는 실부스러기 등을 섬유상태의 것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재용면 사용”으로 표시하는 방법
- (6) 혼용률 산정이 불가능한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7.1.3 (2) 또는 7.1.3.(3) 항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방법으로 표기가 불가능할 경우는 조성섬유 명칭 다음에 “혼용률 불명”이라 표시한다.
- (7) 운동화의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는 겹감(또는 겹피), 안감,창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창 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 7.1.4 통일문자

- (1) 표시에 사용하는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에는 [별표 5]에 따라 통일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류가 불명한 섬유에 대하여는 “불명섬유”라는 문자를 통일문자로 하여 사용하고 조성섬유 중 혼용률이 5% 미만인 섬유에 대하여는 “기타 섬유” 또는 “기타”라는 문자를 통일문자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7.1.4. (1)의 통일문자에는 상표 또는 통일문자 이외의 섬유명을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상표 및 통일문자 이외의 섬유명은 통일문자 다음의 괄호내에 기재한다.
- (3) 혼용률의 표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여야 한다.

### 7.1.5 혼용률에 관한 특례

- (1) 섬유제품 중 [별표 6]에 적힌 조성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산정한다.
- (2) 원단의 장식 또는 조직의 모양에 사용한 실 및 섬유제품의 장식보강 또는 가장자리 등 특정부분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강재, 상표, 무늬, 레이스, 밴드 등에 사용된 실 또는 원단으로서 그 조성 섬유의 전체에 대한 혼용률이 5 %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혼용률을 산정할 수 있다.

- (3) 일부의 조성섬유에 대하여 그 혼용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조성섬유의 혼용률에 대하여는 혼용률을 나타내는 수치에 같음하여 “혼용률 불명” 또는 “불명”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 7.1.6 오차의 허용범위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표시하는 경우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별표 7], 다운제품의 충전재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는 KS K 2620의 5.1 조성 혼합물의 허용범위에 따른다.

#### 7.1.7 용어사용의 제한

- (1) 7.1.1 또는 7.1.3 에 따라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7.1.1 또는 7.1.3의 규정에 의한 표시 이외의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특정의 섬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 (2) 7.1.7 (1)의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의 사용에 있어서 그 섬유의 조성이 100 % 인 때에 한하여 그 문자에 “순” 등 섬유의 조성이 100 % 인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그 문자에 혼방, 교직, 교편 또는 혼용인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할 수 있고, 아울러 모든 조성섬유명을 병기하여 수요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3) 7.1.5 (1) 및 7.1.5 (2)에 따라 혼용률을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조성섬유에서 제외된 실 또는 원단이 사용되어 있다는 뜻을 당해 문자에 각각 부기하여야 한다.
- (4) 조성섬유 표시는 동일 크기의 문자로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7.2 제조국명** 제조국은 제조자가 속한 국가를 말하며, 여러 제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을 부여한 자가 속한 국가 명을 쓰고, 국내에서 제조된 경우에는 한국산 등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기한다.

#### 7.3 취급상 주의사항

**7.3.1** 취급상 주의사항은 [별표 8]에 따라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등을 포함해 4 종류 이상을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기호는 KS K 0021 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류, 손수건, 타올, 모기장, 덮개류, 가방 등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7.3.2** 금속 악세사리를 사용한 제품에는 [별표 8](7)에 따라 녹 및 피부 접촉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7.3.3 불꽃 주의 표시** 불꽃 접근시 제품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별표 8](8)에 따라 “불꽃주의”의 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7.3.4.** 유아 또는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이 안전확인 부속서36(완구)제2부.4.2시험(작은 부품시험)에서 통과되는 작은 부품이 부착된 경우에는 [별표8](9)에 따라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7.3.5. 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은 [별표8](10)에 따라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7.4** 섬유제품의 치수를 표시할 경우는 [별표 9]에 따른다.

**7.5** 안전요건 적합 표시 안전요건에 적합함을 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시사항에 “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한 제품임”의 표시문구를 추가할 수 있다.

[별표 1] 개별제품별 표시사항

섬유상품	품질표시사항
<p>■ 의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의류</li> <li>- 중의류</li> <li>- 내의류</li> <li>- 유아용 및 아동용 의류</li> <li>- 학생복</li> <li>- 한복 등</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겉감</li> <li>- 안감</li> <li>- 충전재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 다)</li> </ul>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 (다운), 깃털 (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로 표기             </li> <li>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li> <li>3. 제조국명</li> <li>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점, 로트번호 등의 어느하나를 표시</li> <li>5. 치수</li> <li>6. 취급상 주의사항</li> <li>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li> </ol>
<p>■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불 및 요</li> <li>- 모포</li> <li>- 침낭</li> <li>- 카페트</li> <li>- 방석류</li> <li>- 쿠션류</li> <li>- 신발류</li> <li>- 솜, 가방, 커튼 등</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겉감</li> <li>- 안감</li> <li>-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 병기. 다 만 다운제품은 솜털 (다운), 깃털(페더), 기 타로 구분하여 % 표기</li> </ul> </li> <li>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li> <li>3. 제조국명</li> <li>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점, 로트번호 등의 어느하나를 표시</li> <li>5. 치수(솜, 가방, 커튼 등 일부제품은 생략)</li> <li>6. 취급상 주의사항</li> <li>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li> </ol>

주)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별표 2] 조성섬유

1. 직물에 있어서는 이를 조직하고 있는 실 (변사를 제외한다)을 조성하는 섬유  
다만, 파일 직물에 있어서는 파일을 조성하는 섬유
2. 편성물에 있어서는 이를 편성하고 있는 실을 조성하는 섬유
3.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
4. 레이스 원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실을 조성하는 섬유
5. [별표 1] 의 섬유제품은 그 원단을 구성하는 섬유 및 충전재 섬유

**[별표 3]** 혼용율이 큰 것부터 순차로 섬유명칭의 문자를 열거하여 표시하는 방법

1. 방모방식의 실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2. 넵사, 슬립사 등 섬유조성이 불균일한 실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3. 기모된 직물 및 편성물과 이를 사용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4. 조성섬유의 일부가 마인 섬유제품 (마 이외의 조성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모·견·비스코스섬유 또는 아세테이트섬유인 것에 한한다)
5. 지조직에 무늬가 있는 원단이 무늬부분 또는 연속무늬가 있는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의 무늬부분
6. 오팔가공한 직물이나 편성물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별표 4]** 혼용률이 큰 것부터 2 이상의 섬유명칭의 문자를 순차로 열거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표시하는 방법

1. 양말
2. 장갑
3. 케미칼레이스 원단 및 겹감에 케미칼레이스 원단만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4. 레이스원단 (지조직을 갖는 것에 한함) 및 겹감에 레이스원단만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등의 지조직 이외의 부분
5. 수공레이스 섬유제품
6. 레이스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등 (3. 및 4.에 적힌 것을 제외한다)의 레이스원단을 사용한 부분
7. 수영복, 체조옷
8. 브래지어, 코르셋, 기타의 파운데이션
9. 이불 및 요의 솜, 침낭의 충전재 (다운제품 제외)
10. 이불 및 요의 겹감과 안감의 조성섬유가 다를 때의 이불 및 요의 겹감

[별표 5] 섬유명칭의 통일문자

섬 유		통일문자
면		면
모	양모	모
	모헤어	모 또는 모헤어
	알파카	모 또는 알파카
	양고라	모 또는 양고라
	캐시미어	모 또는 캐시미어
	낙타	모 또는 낙타
	기타의 것	모
견		견
아	마	마
저	마	
대	마	
황	마	
비스코스레이온	평균 중합도가 450이상인 것	레이온 또는 폴리노직
	그 밖의 것	레이온
모 달	고강력 인장강도와 높은 습윤탄성률을 나타내는 셀룰로오스 섬유 <sup>(1)</sup>	레이온 또는 모달
리오셀	유기용매 방사공정으로 제조된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레이온 또는 리오셀
큐프라 (동암모늄 레이온 섬유)	큐프라 암모늄 공정으로 제조된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레이온 또는 큐프라
아세테이트섬유	초화도가 92 % 이상인 것	아세테이트 또는 트리아세테이트
	그 밖의 것	아세테이트
프로믹스섬유		프로믹스
아라미드	85 % 이상의 아미드 결합이 직접적으로 두 개의 방향족 환에 결합되어 제조된 합성섬유	아라미드
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나일론
폴리비닐알콜계 합성섬유		비닐론
폴리염화비닐리텐계 합성섬유		비닐리텐
폴리염화비닐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
폴리에스터계 합성섬유		폴리에스터

주<sup>(1)</sup> : 컨디션을 거친 인장강도  $B_c$ 와 습윤상태에서 5 % 신장시의 인장강도  $B_w$ 는 다음과 같다.

$$B_c \geq 1.3\sqrt{LD} + 2LD$$

$$B_w \geq 0.5\sqrt{LD}$$

여기에서 LD (Linear Density)는 데시텍스로 나타내는 평균 선형 밀도 (단위길이당 중량)이다.

섬 유		통일문자
폴리아크릴로 니트릴계 합성섬유	아크릴로니트릴의 중량비율로 85% 이상을 함유하는 장쇄상 합성고분자를 섬유의 구성물질로 하는 인조 섬유	아 크 린
	그 밖의 것	아크릴계
폴리에틸렌계 합성섬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계 합성섬유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		폴리우레탄
폴리크랄계 합성섬유		폴리크랄
유리섬유		유리섬유
탄소섬유		탄소섬유
금속섬유		금속섬유
폴리에틸렌계 및 폴리프로필렌계 로 혼합방사 된 합성섬유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 이상 함유된 것.	폴리올레핀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 미만 함유된 것.	80 % 이상 함유된 쪽 섬유명칭을 사용
전 각항의 섬유 이외의 섬유		그 섬유의 명칭을 나타 내는 문자에 “지정의섬 유” 또는 “지정외”라는 문자를 괄호를 붙여 부 기한다.

**[별표 6]**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혼용율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

1. 모포의 모우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이외의 조성섬유
2. 이모편직물 또는 이모편직물을 원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섬유제품 등에 대하여는 이모의 조성섬유 (“겉”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금속사, 첩사, 기타의 섬유 이외의 것으로 가공된 실, 슬릿사, 셀로판사의 조성섬유(금속사, 첩사, 기타의 섬유 이외의 것으로 가공된 실, 슬릿사, 셀로판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넵 또는 슬럽의 부분과 넵 또는 슬럽 이외의 부분의 조성이 다른 넵사 및 슬럽사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의 넵 또는 슬럽의 조성섬유(넵 또는 슬럽의 조성섬유의 종류 및 넵사나 슬럽사를 사용하고 있는 뜻을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겉감의 일부에 레이스원단 (지조직을 갖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등의 레이스원단을 사용한 부분의 지조직 이외의 조성섬유(지조직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섬유제품의 심지·재봉사 등의 부속재료 또는 장식보강재 등으로 사용한 가죽, 인조가죽, 비닐 등의 비섬유재료

**[별표 7]** 혼용률 오차 허용범위

1. 섬유의 조성이 100 %인 뜻을 표시하는 경우 모에 있어서는 - 3 %, 모 이외의 섬유에 있어서는 - 1 % . 단, 방모방식 실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에 섬유의 조성이 100 %인 뜻을 표시하는 경우에 방모방식 실이라는 것 또는 방모방식 실을 사용한 뜻을 부기한 경우와 모 섬유의 조성이 100 %인 뜻을 모포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 5 %
2. 혼용률을 나타내는 수치에 “이상”이라 부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 0 %, “미만”이라 부기하는 경우에는 + 0 %
3. 혼용률을 나타내는 수치를 5의 정수배(100을 제외한다)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 5
4. 섬유제품분야 품질표시기준 7.1.3 (2) 및 7.1.3 (3) 규정에 의하여 조성섬유의 혼용순서를 열기한 경우에 그 열기순서가 2 % 이내의 혼용률의 차이로 잘못된 것은 이를 실제의 혼용순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5. 그 이외의 경우에는 ± 4

**[별표 8]** 취급상 주의표시

(1) 물세탁 방법

취급상 주의 사항
물의 온도 95 ℃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삶을 수 있다.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60 ℃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40 ℃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40 ℃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 <sup>(1)</sup> 도 할 수 있다.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30 ℃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 <sup>(1)</sup> 도 할 수 있다. 세제 종류는 중성 세제를 사용한다.
물의 온도 30 ℃ 를 표준으로 하여 약하게 손세탁 <sup>(1)</sup> 할 수 있다 (세탁기 사용 불가).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물세탁은 안 된다.

주(1) : 약한 손세탁은 흔들어 빨기, 눌러 빨기 및 주물러 빨기가 있다.

(2) 산소 또는 염소표백의 가부

취급상 주의 사항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염소,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
염소,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3) 다림질 방법

취급상 주의 사항
다리미의 온도 180~210 ℃ 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다림질은 형겅을 덮고 온도 180~210 ℃ 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다리미의 온도 140~160 ℃ 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다림질은 형겅을 덮고 온도 140~160 ℃ 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다리미의 온도 80~120 ℃ 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다림질은 형겅을 덮고 온도 80~120 ℃ 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다림질을 할 수 없다.

비 고 : 1. 다림질 방법 기호 중 온도가호 “℃”는 생략할 수 있다.

(4) 드라이클리닝

취급상 주의 사항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 용제의 종류는 퍼클로로에틸렌 또는 석유계를 사용한다.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 용제의 종류는 석유계에 한한다.
드라이클리닝 할 수 없다.
드라이클리닝은 할 수 있으나 셀프서비스는 할 수 없고, 전문점 <sup>1)</sup> 에서만 할 수 있다.

비 고 : 1. 전문점이란 가죽, 모피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말한다.

(5) 짜는 방법

취급상 주의 사항
손으로 짜는 경우에는 약하게 짜고, 원심 탈수기인 경우는 단시간에 짬다.
짜면 안 된다.

(6) 건조방법

취급상 주의 사항
햇빛에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시킬 것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시킬 것
햇빛에 뉘어서 건조시킬 것
그늘에 뉘어서 건조시킬 것
세탁 후 건조할 때 기계건조를 할 수 있음
세탁 후 건조할 때 기계건조를 할 수 없음

(7) 녹 및 피부 접촉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 사항
물 세탁시 녹이 발생할 수 있음
체질에 따라 피부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음

(8) 불꽃주의

취급상 주의 사항
불꽃 접근시 불길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음. 아래의 기호로 병행 표시할 수 있다.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불꽃주의</span>

(9) 유아 또는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의 작은부품에 대한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

(10) 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에 대한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
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깔 수 있음

[별표 9] 섬유제품에 있어서 치수표시

품 명	치수표시명세	제품치수 허용범위
성인 남성복의 치수	KS K 0050에 따름	—
성인 여성복의 치수	KS K 0051에 따름	—
유아복의 치수	KS K 0052에 따름	—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	KS K 0055에 따름	—
팬티스타킹의 치수	KS K 0056에 따름	—
모자의 치수	KS K 0059에 따름	—
양말의 치수	KS K 0088에 따름	—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KS K 9400에 따름	—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	KS K 9401에 따름	—
남자 아동복의 치수	KS K 9402에 따름	—
여자 아동복의 치수	KS K 9403에 따름	—
파운데이션 의류 치수	KS K 9404에 따름	—
기저귀의 치수	KS K 0052에 따름	—
신발의 치수	KS M 6681 또는 KS M ISO 9407에 따름	
장갑의 치수 (mm)	전체길이 및 나비	전체길이 : 표시 길이 이상
모포 이불 및 요 침낭 카펫, 커튼류	제품치수 가로×세로	-3 cm

비 고 1. 치수표시는 cm단위를 사용하여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의류의 치수는 신체치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치수측정은 정밀도를 가진 자로 명확히 재며 제품의 치수는 평평한 대위에 놓고 부자 연한 주름이나 장력이 없도록 한 후 잴다.
4. 치수의 범위 표시가 가능한 제품 중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범위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를 범위 표기법에 중복되지 않게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035호(2007. 1. 24)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79호(2009. 12. 30)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0678호(2010. 12. 27)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1-0727호(2011. 12. 30)
개 정	: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801호(2012. 12. 21)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033호(2017. 2. 8)
개 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195호(2018. 6. 29)